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57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백혜련·홍기원·강준현  
이재강·이수진·박용갑  
민홍철·권향엽·백승아  
남인순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관리번호”를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